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5. 8.(월)

신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위한 '저리대출'에 이어,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'대환대출'도 출시하였습니다.

< 보도 내용(조선일보, 5.8) >

◈ '전세사기 피해자 이주지원 대출, 1%도 실행 안돼'

ㅇ '전세피해자 저리대출 집행률 0.8%, 지원요건 완화해 실효성 높여야'

□ 국토부는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위한 '저리대출'에 이어, **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**을 위해 **대환대출**도 출시하였습니다.

ㅇ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나, **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**을 지원하기 위해 **저리대출*** 상품을 **출시**(1.9) 하였으며,

* (저리대출) 계약이 종료되거나 경·공매가 완료되는 등 **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**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

ㅇ 아울러, **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**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**대환할 수 있는 상품***도 **추가 출시**(4.24)하였습니다.

* (대환대출)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**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**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(4.24 우리은행부터 출시)

□ **'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'**과 **'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'** 모두 **기금 대출지원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ㅇ 학업·직장 등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은 **임차권 등기 후 퇴거**하고 **'저리대출'**을 이용하면 되며,

-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은 '**대환대출**'을 이용하면 되므로, **향후 지원실적**은 **늘어날 것***으로 예상됩니다.

* 기금 예산 1,660억원은 **저리대출**과 **대환대출**을 **모두 포함한 예산**

□ 아울러, 기사에서 언급된 '**보증금의 5%**'는 신규 전셋집에 대한 계약금으로 모든 기금상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며,

○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**대환대출**에는 **적용되지 않습니다**.

□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'저리 대출'과 '대환대출'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	정진훈 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	백두진 (044-201-3339)
	우리은행 주택기금부	책임자	부 장	오수용 (02-2002-3533)
		담당자	계 장	이한빈 (02-2002-537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